

『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8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1일

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인 기

나. 제안이유

- 「식품위생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상위법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식품위생법의 조례 위임조항 개정(안 제1조)
-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(안 제5조)
- 기금심의위원회 시의원 추가 및 간사 조항 신설(안 제6조)
- 그 밖에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『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
- 「식품위생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상위법의 조항과,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,
-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(국장)과 기금출납원(과장)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